

2023년 설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

2022. 12.



목 차

1. 추진 개요	1
2. 추진 내용	1
3. 홍보 방안	3
4. 추진 일정	3
붙임1. 기관별 세부 추진일정	4
붙임2. 기관별 세부 추진사항	5
붙임3.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지정운영지침	12
별지1.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 및 약국 운영계획	17
별지1-1.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 및 약국 운영명단	18
별지1-2. 시도 상황근무자 명단	20
별지2.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 및 약국 운영실적	21
별지3.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에 대한 점검결과	22
별지4. 연휴기간 문 여는 약국에 대한 점검결과	24

1 추진 개요

- (목적) 설 명절 기간 중 응급의료체계 유지 및 진료공백 방지
- (기간) '23.1.21.(토) ~ '23.1.24.(화) (4일간)
- (관련기관) 보건복지부,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, 국립중앙의료원(중앙응급의료센터), 공공보건의료기관, 응급의료기관(응급의료시설), 기타 설 연휴기간 문 여는 병·의원 및 약국
- (관련규정)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8조, 제32조, 제34조, 동법 시행령 제9조, 동법 시행규칙 제19조, 제21조

2 추진 내용

- 설 연휴 기간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
 - 응급의료기관(410개, '22.11월), 응급의료시설(115개, '22.11월)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
 - 응급의료기관(시설)이 아닌 병·의원과 약국 중 신청*을 받아 연휴기간 문 여는 병·의원 및 약국을 지정·운영
- * 의사협회, 약사회 등 관련 협회 및 단체로부터 신청
 ※ 필요 시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른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

<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·약국 지정 기준 및 연휴 응급진료 내용 >

기 관	지정 기준	연휴 응급진료 내용
응급의료기관	·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6조, 제29조, 제30조, 제31조에 따라 旣지정·운영 * 응급의료기관 410개소('22.11월 기준)	· 24시간 응급실 운영 · 필요 시 외래 진료
응급의료시설	·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의2에 따라 旣지정·운영(기존 21개 취약지 당직의료기관 포함)	· 24시간 응급실 운영 · 필요 시 외래 진료

기 관	지정 기준	연휴 응급진료 내용
非응급의료기관·시설 (기타 병·의원)	<문 여는 병·의원> · 관련 협회 및 단체로부터 신청 받아 연휴기간 문 여는 병·의원 지정 및 운영	· 신청한 날짜·시간에 외래진료
	<당직의료기관> · 필요시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라 지정 및 운영	
약국	· 인구 2만명 당 1개소 지정	· 신청한 날짜·시간에 약국 운영
보건소 등	·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라 旣지정·운영	· 주간 진료 실시 및 야간 당직근무 유지

○ 중앙 및 지역 응급진료상황실 운영

- (중앙) 보건복지부(응급의료과)에 설치·운영*, 응급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, 다수사상자 발생으로 응급의료지원 필요 시 상황 총괄, 설 연휴 기간 중 응급진료실적 파악·관리**
- * 09:00~18:00 응급의료과 내 근무, 18시 이후부터는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 유지
- **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·약국 안내 실적 및 운영 현황 등
- (지역)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설치·운영, 설 연휴 지역 응급진료대책 수립·운영, 연휴기간 동안 문 여는 병원·약국 운영 현황 점검(유선 또는 방문), 시·도 및 보건복지부로 상황 보고
- * 연휴기간 내 각 시·도 근무자는 매일 16:30까지 '응급의료정보시스템'에 상황입력 후 보건복지부 유선 보고

< 보고체계(통합 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이용) >



○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시 조치계획

- (목적) 다수 인명피해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가동시켜 초기대응 및 상황관리
- (복지부) 다수사상자 발생현황 종합, 필요 시 의료지원 규모 결정 등 재난의료지원 총괄
- (중앙응급의료센터)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서 119상황실과 정보 공유하며 다수 인명피해 발생 모니터링
- (지자체) 상황 발생 시 보건소 신속대응반 및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(DMAT)이 출동하여 현장응급의료 지원

3] 홍보 방안

- (유선) 129 보건복지콜센터, 119 구급상황관리센터, 120 시도 콜센터
- (인터넷) 응급의료포털(www.e-gen.or.kr), 응급의료정보제공 앱(App), 복지부·지자체 홈페이지, 주요포털에서 '명절진료' 등 검색

4] 추진 일정

- 계획 수립·통보 : '22년 12월 5주
- 문 여는 병원·약국 현황 취합 및 관련 기관 통보
 - (1차) '23년 1월 11일(수) / (2차) 1월 18일(수)
- 설 연휴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 자료 취합 : 1월 16일(월)
- 설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 : '23년 1월 21일(토) ~ 1월 24일(화)
- 운영 결과 최종 보고 : '23년 1월 31일(화)

【붙임1】

기관별 세부 추진 일정

기 관		내 용	추진 일정
보건복지부	⇒ 사·도 중앙응급의료센터	1. 설 연휴 응급진료 계획 수립·통보	2022. 12. 27.(화)
	⇒ 구급상황관리센터 (119)	2.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·약국 현황 통보	2023. 1. 19.(목)
	⇒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	3.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·약국 현황 통보	2023. 1. 19.(목)
	⇒ 청와대, 국무총리실 등	4. 응급진료 일일 상황보고	연휴 당일 18:00
	⇒ 내부보고	5. 연휴기간 상황실 운영결과 최종보고	2023. 1. 31.(화)
중앙응급의료센터	⇒ 보건복지부	1. 연휴 응급진료계획 제출 -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·약국 현황 정보 입력 및 안내시스템 구축(홈페이지,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)	~2022. 12. 29.(목)
	⇒ 시·도	2. 응급의료정보시스템 입력 교육(시·도 및 시·군·구 담당자)	2022. 12. 27.(화) ~2023. 1. 6.(금)
시·도	⇒ 보건복지부	1. 연휴기간 시·도별 응급진료계획 제출 - 문 여는 병원·약국현황 1차 입력 완료 - 문 여는 병원·약국 운영기관 입력 마감	2023. 1. 6.(금) 2023. 1. 11.(수) 2023. 1. 18.(수)
		2.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·약국 운영실적 (유선 보고 병행)	연휴 당일 16:30
		3.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·약국 점검 결과 제출	2023. 1. 30.(월)
⇒ 중앙응급의료센터	1.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공문 송부	2023. 1. 13.(금)	

【붙임2】

기관별 세부 추진 사항

(1) 보건복지부

- 명절 연휴기간 응급진료계획 수립
- 의사회·약사회 등 관련 단체 협조 요청
-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(119) 협조 요청
 - 연휴기간 동안 지정된 문 여는 병원·약국 안내 요청
-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문 여는 병원·약국 명단 게시
- 중앙응급진료상황실 설치·운영 및 보고
 - 운영기간 : 2023. 1. 21.(토) ~ 1. 24.(화) (09:00~18:00)
 - * 18시 이후부터는 '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'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 유지
 - 상황 총괄, 시·도 응급진료실적 파악·보고(당일 18:00 까지)
 - 주요 사건·사고 등 인명피해현황 실시간 모니터링

(2) 국립중앙의료원(중앙응급의료센터)

- 대규모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의료지원 실시
-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·약국 정보 입력·안내시스템 구축 지원
 - 시·도 및 시·군·구 담당자 대상 문 여는 병원·약국 명단 등 시스템 입력 교육* 실시('22.12.27.~'23.1.6.,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)
 - * 응급의료정보시스템에 문 여는 병원·약국 명단 및 시·도 상황근무자 명단 입력 방법 등

-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·약국 대국민 안내시스템* 구축
 - * 홈페이지(www.e-gen.or.kr)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(응급의료정보제공)
- 연휴기간 응급의료정보시스템 지원반 운영('23.1.21(토).~1.24.(화))

(3) 광역지방자치단체

- 시·도별 연휴 응급진료계획 수립·시행
 - 시·도는 자체 연휴 응급진료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·군·구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관련기관에 통보
 - * 보건복지부에도 2023.1.6.(금)까지 동 계획을 보고
 -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대규모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의료인력, 구급차 동원계획 수립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하도록 조치
 - 대규모 환자발생 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즉각 대처, 상황 및 주요 조치내용을 보건복지부 상황실로 통보
 - 관내 시·군·구의 응급진료계획 점검·조정
 - 시·군·구로부터 취합된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자료를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송부('23.1.13.(금)까지)
 - 시·군·구로부터 취합된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·약국 운영 명단 및 시·도 상황근무자 명단을 「통합 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」(이하 '시스템')에 '23.1.11.(수)까지 입력
 - 수정사항 발생 시 2023.1.18.(수)까지 입력 마감
 - 시·도 담당자 : 관할 응급의료정보시스템 계정 신청·등록
 - * 별지 1, 1-1, 1-2호 서식 참조 / 시스템 문의: 중앙응급의료센터(02-6362-3434 또는 3448)
 - 명절 연휴기간 중 문 여는 병원·약국 운영실적을 당일 16:30 까지 시스템으로 일지 제출(별지 제2호 서식 참조)

○ 의약기관 평시 진료정보 추가입력

- 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원·약국 운영 명단에 더불어 의약기관 정보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평시 진료정보 입력*도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의 협조 필요

※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(<http://portal.nemc.or.kr>) [의료기관관리] → [의약기관 운영시간 갱신등록]

- ◆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의약기관 진료정보를 수집하여 응급의료포털 E-gen(홈페이지)과 응급의료정보제공(앱)으로 제공하고 있음
- ◆ 응급의료지원센터는 정보의 신뢰도 및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연1회 유선 확인 등을 통하여 질 관리를 하고 있으나, 수시로 변경되는 기관정보를 일일이 통화하여 확인하는 것은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에게 어려움이 있음

○ 연휴 응급진료 관련기관 사전 협의

- 관할 보건소,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연휴기간 응급진료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
- 국립중앙의료원(중앙응급의료센터)에서 실시하는 응급의료정보시스템 입력 교육('22.12.27.~'23.1.6.)에 보건소 담당자가 참여토록 협조

○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·약국 지정·통보

- 각 시·군·구(보건소)에서 수립한 응급진료계획에 따라 문 여는 병원·약국 지정의 적정여부 검토
- 시·군·구가 지정한 문 여는 병원·약국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시·도가 추가 지정
- 시·도는 추가 지정한 문 여는 병원·약국에 대한 직접통보가 어려울 경우 각 보건소가 지정 사실을 통보하도록 조치
 - *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·의원 및 약국 지정·운영 지침(붙임3) 참고
- 응급의료기관(시설), 문 여는 병·의원, 약국 및 선별진료소 명단을 시·도 홈페이지 게재(1.18.(수)까지)

◆ 문 여는 병·의원, 약국이 지정일자에 진료 또는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 최소 24시간 전에 시·군·구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, 해당 시·군·구는 시·도,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응급진료기관, 문 여는 병·의원 및 약국 현황이 수정 되도록 조치

○ 연휴 응급진료상황실 설치·운영

- (운영기간) '23. 1. 21.(토) ~ 1. 24.(화), 09:00~18:00
 - * 18시 이후부터 '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'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 유지

○ 시·군·구 상황실·응급진료체계 점검 실시

- 보건소 상황실 근무 점검, 비상연락체계 확인,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·약국 및 선별진료소 운영여부 점검

○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·약국 점검에 대한 조치

- 불이행으로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
 - * 응급·당직의료기관의 경우 「응급의료법 시행규칙」 제45조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 가능, 비상응급·당직의료기관 등의 경우 행정지도 요망
- 불이행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사항(별지 제3호서식) 및 약국 점검결과(별지 제4호서식)를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(2023.1.30.(월))
 - * 보건복지부에서 의협·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불이행 기관 통보 예정

(4) 기초지방자치단체

㉠ 보건소·보건의료원

○ 관내 연휴 응급진료계획 수립·시행

- 시·군·구는 지역 의사회 및 약사회로부터 통보받은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 및 약국을 조정하여 지정하고 연휴기간 중 응급진료 계획을 수립하여 시·도에 보고

-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 및 약국이 지정일자에 진료 또는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 최소 24시간 전에 시·군·구와 협의를 거쳐 시·도,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복지부에 보고
- 문 여는 약국은 가급적 인근 문 여는 병원과 동시에 운영하도록 조정, 지역별 실정에 맞게 약국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
- 시·군·구는 시·도가 추가 지정한 문 여는 병원(당직의료기관 포함) 및 약국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기관에 지정된 사항을 보고
- 연휴기간 응급진료계획과 문 여는 병원 및 약국 현황을 취합하여 시스템에 입력 완료 후 선별진료소 운영시간(별도)과 함께 시·도에 보고
- 시·군·구(보건소) 담당자 : 관할 응급의료정보시스템 계정 신청·등록
 - * 시스템 문의 : 중앙응급의료센터(02-6362-3434 또는 3448)

○ 보건소 진료를 통한 공공의료 보장성 확보

- 시·군·구는 명절 연휴기간 자체 진료 실시 및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야 하며 명절 당일 등 취약기간 및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의 보장성 확보
- * 연휴기간 중 주간(09:00 ~ 18:00)진료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(연장가능), 야간에는 당직근무체계를 통한 응급진료 가능하도록 유지, 다만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인력부족 시 탄력적 운영 가능

○ 연휴 응급진료체계에 대한 홍보

-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 및 약국 명단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
- 보건복지콜센터(129), 119구급상황관리센터(119), 시도콜센터(120), 응급의료포털(www.e-gen.or.kr) 이용하여 관내 문 여는 병원 및 약국의 안내를 받을 수 있음을 적극 홍보
- 기타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 강화

○ 응급진료상황실 설치·운영

- (운영기간) '23. 1. 21.(토) ~ 1. 24.(화), 09:00~18:00
- * 18시 이후부터 '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'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 유지

○ 관내 문 여는 병원 및 약국 운영현황 점검

- 관내 응급진료계획에 따라 문 여는 병원 및 약국 운영 여부를 유선 점검, 필요 시 현장방문 확인 병행
- 야간에 응급실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·감독
- * 종합병원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「의료법」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거 반드시 응급실을 두도록 되어 있으므로 응급환자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 실시

② 보건지소·보건진료소

○ 필요시 보건지소 진료를 통한 공공의료 보장성 강화

- 진료를 실시할 경우 해당사항을 사전에 적극 홍보

(5) 응급의료기관 등

① 권역응급의료센터

○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지원체계 확립

- 재난의료지원팀(DMAT) 운영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
- 재난의료지원차량 및 구급차 출동태세 확립
-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

○ 24시간 응급실 운영 강화

- 응급실 전담 전문의 배치 및 응급환자 진료실시

② 응급의료기관(전문·지역응급의료센터, 지역응급의료기관), 응급의료시설, 종합병원

○ 24시간 응급실 운영 강화

- 응급실 전담 의사 배치 및 응급환자 진료 실시
- 전문과목별 당직전문의 지정·운영하여 비상진료체계 구축
- 구급차 출동 준비

○ 필요시 응급의료기관 외래 진료개설

- 시·도지사 또는 시·군·구청장이 당직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응급의료기관장과 협의하여 외래 진료 개설

[6] 非응급의료기관·시설(당직의료기관 포함)

○ 연휴기간 문 여는 병·의원 운영계획을 준수하여 지정일자에 운영

- 지역주민의 진료에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문 여는 병·의원 운영
- 부득이한 사유로 진료를 할 수 없을 경우 당번일이 시작되기 최소 24시간 전에 해당 시군구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후속조치
- 시·도, 시·군·구,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복지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운영 병·의원 현황이 수정되도록 조치

○ 휴무 의료기관은 인근 문 여는 병·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 부착

- 휴무기간, 인근 문 여는 병·의원 의료기관 위치 및 전화번호 기재

[7] 약 국

○ 연휴 기간 문 여는 약국 운영계획을 준수하여 지정일자에 운영

- 지역주민의 의약품 구입 등에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문 여는 약국 운영
-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을 할 수 없을 경우 당번일이 시작되기 최소 24시간 전에 변경승인을 받아 필요한 후속조치
- 시·도, 시·군·구,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복지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약국 현황이 수정되도록 조치

○ 휴무 약국은 인근 문 여는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 부착

- 휴무 기간, 인근 문 여는 약국 위치 및 전화번호 등 기재

【붙임3】

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지정·운영 지침

□ 개요

- **(목적)** 응급환자의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
 - 연휴기간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에 있어 국민 불편 최소화와 적정 진료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방지
- **(근거)**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등
- **(내용)** 명절 연휴기간 중 환자의 일차진료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 중 최소한의 문 여는 병·의원을 지정·운영 (필요 시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)
 - 일차진료를 위한 의료자원이 부족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인접 지역의 의료기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민의 불편 최소화
 - 문 여는 병·의원 인근을 중심으로 문 여는 약국을 동시 지정·운영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

□ 문 여는 병·의원

- 관련 협회 및 단체로부터 신청 받아 **연휴기간 문 여는 병·의원 지정·운영**
 - * 필요 시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라 **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·운영**
- **문 여는 병·의원 지정권자** :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
 - **공휴일 또는 야간** 그 밖에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정

* 지정신청을 한 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신청을 한 의료기관외의 의료기관을 문 여는 병·의원(당직의료기관)으로 직접 지정
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

- 재해 또는 사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구역 내에서 응급환자의 진료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
- 시·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

- 문 여는 병·의원을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 관할 시도의 전체 지역이거나 2 이상의 시·군·구에 해당하는 경우
- 의료기관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·군·구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의료권역을 정한 경우
- 시·군·구청장이 지정한 문 여는 병·의원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-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

- 문 여는 병·의원을 지정하여야 하는 범위가 전국 또는 2 이상의 시·도에 해당하는 경우
- 의료기관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·도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의료권역을 정한 경우
- 시·도지사가 지정한 문 여는 병·의원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○ 문 여는 병·의원 지정기준

- 특별시·광역시 : 시·군·구의 인구 20만명당 각 계열별 최소 1개소
 - * 각 계열별 진료과목은 중복되지 않도록 지정
- 도 지역 : 시·군·구의 인구 10만명당 각 계열별 최소 1개소
 - * 각 계열별 진료과목은 중복되지 않도록 지정

- 의료취약지역의 대책

- 전문과목의 중복 : 1개소의 병·의원이 다양한 과목의 진료가능한 경우 중복하여 지정
-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활용 : 관내의 보건의료원,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를 포함하여 지정
- 공동지정 : 시·도지사의 조정하에 인접 시·군·구와 진료권을 통합하여 지정

○ 문 여는 병·의원의 지정대상 및 진료과목

- 지정범위 : 시군구 관내 의료기관 중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병·의원 중에서 지정
- 기본과목 : 이용자가 많고 광범위한 상병을 진료 가능한 다음의 진료과목을 계열별로 지정

계열	진료과목
내과계	내과, 가정의학과, 이비인후과 등
소아과계	소아청소년과, 가정의학과, 내과, 이비인후과 등
외과계	외과, 정형외과, 가정의학과, 흉부외과, 마취통증의학과 등

- 선택과목 : 질병의 유행 등으로 인해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선택적으로 지정
- 진료과목 : 안과, 이비인후과, 산부인과, 피부과

○ 문 여는 병·의원 지정 절차

- 지정 및 운영계획 수립

- 시·도별 문 여는 병·의원의 지정·운영계획을 수립·시행
- 시·군·구별 문 여는 병·의원의 지정·운영계획을 수립·시행

- 관련기관 협조 및 직접 지정

- 관내의 의료인단체 또는 개원 의료인단체와 협의하여 충분한 의료기관을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
- 협의에도 불구하고 적정 수의 문 여는 병·의원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하지 않은 의료기관 중에서 직접 문 여는 병·의원(당직 의료기관) 지정

- 지정사실 통보

- 문 여는 병·의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연휴 1주일 전에 통보·고지
- 통보내용 : 문 여는 병·의원의 지정사실, 지정일시, 지정의 취지 및 진료 불이행시의 불이익*
* 응급의료기관 및 당직의료기관 해당

□ 문 여는 약국

○ 기본방향

-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 인근 약국을 문 여는 약국으로 지정

○ 지정기준

- 시·군·구의 인구 2만명당 최소 1개소 지정

○ 지정대상 및 절차

- 문 여는 병·의원 지정 지침을 준용

□ 지도·감독

○ 진료 및 운영 여부의 확인

-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 및 약국의 운영기간 동안 해당기관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방문 또는 유선 등을 이용하여 운영 여부를 수시로 확인

□ 안내·홍보

○ 사전 홍보

-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 및 약국의 지정·운영현황을 지역신문,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사전 공지

○ 실시간 홍보

-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(www.e-gen.or.kr)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(응급의료정보제공)을 이용하여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 및 약국 실시간 안내
- 기관명, 전화번호, 주소, 일자별, 시간대별 운영현황

별지 제1호서식

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 및 약국 운영계획

(단위 : 개소)

구 분		1.21.(토)	1.22.(일)	1.23.(월)	1.24.(화)
문 여는 병원	응급의료기관	소계			
		권역·전문응급의료센터			
		지역응급의료센터			
		지역응급의료기관			
	응급의료시설				
	종합병원 응급실				
	기타 병·의원	소계			
		병원			
		의원			
	공공의료기관	소계			
보건소					
보건의료원					
보건지소					
	보건진료소				
문 여는 약국	약국				
총 계					

* 통합 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메뉴 중 "별지 제1호서식"

별지 제1-1호서식

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 및 약국 운영명단

○ 시·군·구

(단위 : 개소)

구분	명칭	소재지	전화번호	진료계획(일자)				비고
				일시	일시	일시	일시	
계								
문 여는 병원	응급 의료 기관	소계						
		권역·전문센터						
		지역센터						
		지역기관						
	응급의료시설							
	종합병원 응급실							
	기타 병·의원	소계						
		병원						
		의원						
		공공의료기관						
문 여는 약국	소계							
	약국							

※ 작성방법

- 진료계획에 반드시 진료시간구분을 하여 기재
 - 진료실시할 경우는「○○:○○~○○:○○분까지, 예시) 09:00~21:00」, 미실시할 경우는 「공란」으로 작성
- 시·군·구에서 등록된 내용을 열람하는 광역시·도 인트라넷 메뉴 중 “별지 제1-1호서식”

별지 제1-2호서식

○○시·도 상황근무자

근무일	성명	비상연락처		비고
		사무실	핸드폰	

* 통합 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[비상근무자] 등록 메뉴를 활용하여 제출
 * 담당자 : 명절비상대책 담당자 등록 / 비상근무자 : 명절비상근무 해당일자 당직자 등록

별지 제2호서식

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 및 약국 운영실적

(단위 : 개소)

구 분		1.21.(토)	1.22.(일)	1.23.(월)	1.24.(화)
문 여는 병원	응급의료기관	소계			
		권역·전문응급의료센터			
		지역응급의료센터			
		지역응급의료기관			
	응급의료시설				
	종합병원 응급실				
	기타 병·의원	소계			
		병원			
		의원			
	공공의료기관	소계			
		보건소			
		보건의료원			
보건지소					
	보건진료소				
문 여는 약국	약국				
총 계					

※ 각 시·도에서는 일일운영실적을 매일 16:30까지 통합 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메뉴 “시군구 보고서 제출현황”에서 [일지제출확인] 버튼 클릭으로 운영실적 제출

별지 제4호서식

연휴기간 문 여는 약국에 대한 점검결과

1. 점검결과

(단위 : 개소)

구분 지역	누계				일시															
	마감		불이행	추가																
	합계	이행			합계	이행			합계	이행			합계	이행			합계	이행		
시·도																				
시·군·구																				
시·군·구																				
시·군·구																				

※ 작성방법

- 지역 : 관할 시·군·구별로 구분하여 작성
- 합계 : 계획서 제출 당시('23.1.19.) 해당일 운영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수
- 이행 : 계획서 제출 당시 해당일 운영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중 실제 운영한 기관 수
- 불이행 : 계획서 제출 당시 해당일 운영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이나 실제 미 운영한 기관 수
- 추가 : 계획서 제출 당시 해당일 미운영기관이나 실제 운영한 기관 수

2. 조치사항

3. 특이사항